

소 장

원 고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01호(서교동, 한국여성재단)
대표자 강정수

원고 소송대리인
별지 참조

피 고 한국국방연구원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갑 제1호증 원고 사업자등록증).

피고 한국국방연구원장은 국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방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국방부는 2021. 피고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피고는 위 연구를 2023. 완료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성전환자)군 복무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자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이투데이 2023. 2. 15.자 기사).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연구용역이 완성된 뒤에도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6. 2. 24. 소외 국방부와 피고에게 위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이후 국방부는 이를 소관기관인 피고에게 이송하였으며, 피고는 2026. 3. 4. 원고에게, 원고의 각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3-1호증 내지 제3-2호증 각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일반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된 정보에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 행정청에 그 주장, 증명책임이 있으며, 피고 행정청은 대상이 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사유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알 권리의 성격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과 보호하려는 외교 관계 등 국가 이익의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615 판결).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국민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오고,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상정하기 곤란한 때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9879 판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국방에 관련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위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4구합4063 판결). 나아가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국방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있다거나 국가안보나 군사활동의 내용,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정보라고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3. 14. 선고 2024구합67764 판결).

위와 같은 각 판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에 관련된 자료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

다.

나. 이 사건 정보 공개의 필요성

1)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이 사건 정보는 2020.경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계기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 및 관련 지원 체계에 관한 정책적 공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2021. 고(故) 변희수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서 법원이 “군대 내 성전환자의 복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자, 국방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주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용역은 법원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 복무 제도의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사건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성전환자의 복무 환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국내외 법제도 비교 분석, 의료적·사회학적 검토, 정책 제언 등으로 구성된 학술적·정책적 성격의 자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2호증 이투데이 2023. 2. 15.자 기사).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를 명확히 제시한바 없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각 호의 비공

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비공개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면서도, ‘국방부 부여 과제로 제기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고만 밝혔을 뿐,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바 없습니다.

3)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는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에는 (1) 현역 병, 간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2)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시의 그 범위에 대한 정책 제안, (3) 성전환 장병들이 사용할 위생 시설에 관한 정책 제안, (4) 성별 불일치 장병들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촉구, (5) 군 복무 인정 여부를 결정한 법과 제도의 미비 상태 지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갑 제4호증 뉴스1 2023. 7. 7.자 기사).

그런데 위와 같은 정보 중 (1) 여론조사의 경우 군 장병과 국민들이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일 뿐이고 국방이나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5)의 법제도 미비 상태에 대한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과 (5)의 경우 국방과의 관련성이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애초에 없는

정보입니다.

또한 (2) 내지 (4)의 정책 제안이나 대책 마련 촉구의 경우 모두 연구기관으로서 피고의 정책에 대한 제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이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가사 국방이나 국가안전보장과 다소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이 곧바로 국방부 혹은 국가 전체 단위의 정책으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와 같이 피고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내용은 성환자의 군 복무 가부와 위생시설 확충, 제도상 미비점 해소에 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 내용은 국방력 현황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에 관한 것도 아니고, 군사활동의 내용이나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정보도 아님이 그 자체로 명백합니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 정보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면, 피고는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월등히 큼니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소 존재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

보의 공개로 인한 공익과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공개로 인한 이익이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커야 함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월등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부가 의뢰하여 공적 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그 자체로 강한 공공성을 지닙니다. 특히 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보유한 객관적 연구 데이터는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성전환자 군복무에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편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복무 중 또는 복무를 앞두고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군대 내의 처우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군 내부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장병들에게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적용될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처분 발생시 이에 맞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를 밟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추구하는 최우선적 가치라 할 것입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비공개 이익은 구체적 위험이 아닌,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국가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는 군 내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합리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공고해집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현행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국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관련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공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비공개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 할 것입니다.

5) 피고는 부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 및 위 판례에 반하는 과도한 조치이므로 공개가 가능한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결국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정책 제안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정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군 내 차별 실태의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갖는 공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안보 등의 공익보다 월등히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군 내 성소수자 군복무 관련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와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당한 정보 비공개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의 소중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군 내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나아가 인권친화적인 군 인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바, 그 공익적 필요성은 피고가 내세우는 막연한 안보 우려보다 월등히 지대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인바 귀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원고 사업자등록증 |
| 2. 갑 제2호증 | 이투데이 2023. 2. 15.자 기사 |
| 3. 갑 제3-1호증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 4. 갑 제3-2호증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
| 5. 갑 제4호증 | 뉴스1 2023. 7. 7.자 기사 |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2. 소송위임장

2026. 5.

원고의 소송대리인

서울행정법원

귀중